

대법원 2023도1471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등 사건 보도자료

대법원 공보연구관실(02-3480-1895)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인 피고인이 제 3자로부터 정부 지원금, 우선수익금 인수, 경찰 인사 등 여러 청탁을 받고 정치자금이나 알선 등 명목으로 금품을 수령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에서, **검사 및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 위반(알선수재) 중 일부, 각 정치자금법 위반, 각 변호사법 위반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각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알선수재) 중 일부, 각 변호사법 위반 중 일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 (징역 1년 8개월 및 징역 2년 6개월, 몰수, 896,808,700원 추징)을 **확정함**(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3도14714 판결)

1. 사안의 개요

가. ① 범행 배경

▣ 피고인 및 관련자의 지위 등

● 피고인:

- 더불어민주당 서초갑 지역위원회 지역위원장, 사무부총장 등을 역임하였음

● 박○○:

- 부동산 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 회장(경영 총괄). A 회사는 2020.6.경부터 수력발전기 제조·판매업, 신재생에너지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의 수주업무를 대행하였음

- 피고인은 2019. 12.경 반복된 선거 출마로 각종 선거비용을 지출하게 되었으나 별다른 수입원이 없어 유동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2020. 4. 실시 예정인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더불어민주당 서초갑 지역구 후보자로 다시 출마할 계획을 갖고 있어 선거비용 등 정치활동에 소요될 자금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었음
- 피고인의 선거비용 요구와 박○○의 청탁 관계 형성
 - 박○○은 2019. 11.경부터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인 ○○○○ 투자 주식회사로부터 자금을 출자받아 벤처펀드를 운용하는 중소기업 창업투자사인 □□투자파트너스 유한회사 인수를 추진하던 중 인수에 반대하던 위 유한회사 감사 김○○이 피고인과 친분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지인을 통해 피고인을 소개받아 2019. 11. 말경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에게 '□□투자파트너스를 인수하려는데 김○○에게 인수를 반대하지 않도록 잘 얘기해 달라'는 취지로 청탁하였음
 - 이에 피고인은 박○○이 □□투자파트너스를 인수할 정도의 자금 동원력이 있다고 판단하여 박○○으로부터 위와 같은 청탁을 받은 것을 기회로 박○○이 요청하는 각종 사업 관련 청탁을 들어주면서 박○○에게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비용 등 정치자금을 요구하기로 마음먹고, 2019. 12. 초순경 박○○을 만난 자리에서 박○○에게 '□□투자파트너스 운용 자금은 중소벤처기업부 자금이라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움직여야 한다. 장관과 친한 관계이니 장관과 김○○에게 인사할 돈으로 2,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알선 금원을 요구하면서, '나는 유력 정치인 송○○ 국회의원의 측근이고 대통령비서실장과의 친하다', 선거비용이 필요하다', '나를 많이 도와주면 나중에 잊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음
 -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요구를 받은 박○○은 피고인이 국회의원에 당선되거나 당선되지 않더라도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원, 장관 등 유력 정관계 인사들과의 인맥을 이용하여 여러 사업적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피고인이 요구하는 선거비용 등 정치자금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사업적 청탁을 하기로 마음먹었음

나. 공소사실의 요지

- (1) ㉔ 창업투자사 인수 및 출자 지원 관련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알선수재)
- 2019. 12. 10.경 및 2020. 1. 19.경 □□투자파트너스 인수 및 □□투자파트너스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 자금 배정 등 관련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4,000만 원 수수(☞ 무죄)
- (2) ㉓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공천인사 등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박○○으로부터, 2019. 2. 12.경 5,000만 원, 2020. 2. 20.경 1,000만 원의 각 정치자금을 기부받았음
- (3) ㉒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기간 중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 2020. 3. 13. ㉑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 5,000만 원을 기부받음과 동시에 ㉔ 주식회사 E 정부 지원금 지원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직무(☞ 무죄), ㉕ 주식회사 F 물류단지 실수요검증 절차 관련 대통령비서실장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위 5,000만 원을 수수하였음
 - 2020. 3. 25. ㉑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 3,000만 원을 기부받음과 동시에 ㉔ 주식회사 E 정부 지원금 지원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직무, ㉕ 주식회사 F 물류단지 실수요검증 절차 관련 대통령비서실장의 직무, ㉖ △△△△△△파트너스 주식회사의 모태펀드 출자사업 선정 관련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직무(☞ 무죄)에 각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위 3,000만 원을 수수하였음
 - 2020. 3. 26. ㉑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 3,000만 원을 기부받음과 동시에 ㉔ 주식회사 E 정부 지원금 지원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직무, ㉕ 주식회사 F 물류단지 실수요검증 절차 관련 대통령비서실장의 직무, ㉖ △△△△△△파트너스의 모태펀드 출자사업 선정 관련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직무에 각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위 3,000만 원을 수수하였음
 - 2020. 3. 31. ㉑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 3,000만 원을 기부받음과 동시에 ㉔ 주식회사 E 정부 지원금 지원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직무, ㉕ 주식회사 F 물류단지 실수요검증

절차 관련 대통령비서실장 등의 직무, ㉔ △△△△△△△파트너스의 모태펀드 출자사업 선정 관련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직무, ㉕ ●●자 산신탱 자금 집행 관련 국토교통부 장관 등의 직무에 각 속한 사항의 알선(⇒ 무죄)에 관하여 위 3,000만 원을 수수하였음

- 2020. 4. 7.부터 2020. 4. 14.까지 ㉖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 1억 3,000만 원을 기부받음과 동시에 ㉗ 주식회사 E 정부 지원금 지원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위 1억 3,000만 원을 수수하였음
- (4) ㉘ KF94 인허가 위반 마스크 생산업체 생산 중지 처분 취소 등 관련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알선수재)
- 주식회사 G의 마스크 의약외품 품목허가 등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박○○으로부터 2020. 5. 4. 1억 원, 2020. 5. 6. 1억 원 합계 2억 원을 수수하였음
- (5) ㉙ 2020. 6. ~ 2020. 9.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
- 2020. 6. 30.부터 2020. 7. 1.까지 박○○으로부터 주식회사 ▲▲▲건설이 보유한 ■■■마을 개발에 따른 제1 순위 우선수익권 인수 관련 대통령비서실장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2억 원을 수수하였음
 - 2020. 7. 14. 박○○으로부터 ㉚ ▲▲▲건설 보유 우선수익권 인수 관련 대통령비서실장의 직무, ㉛ ■■■○○발전 주식회사 상대 주식회사 B의 발전설비 납품 관련 대통령비서실장의 직무에 각 속하는 사항, ㉜ 공공기관인 ■■■○○발전 사장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수수하였음
 - 2020. 7. 21. 박○○으로부터 ㉝ ■■■○○발전 상대 주식회사 B의 발전설비 납품 관련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 ㉞ 공공기관인 ■■■○○발전 사장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한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 ㉟ 공공기관인 한국XXX공사에 대한 태양광발전 설비 납품 관련 한국XXX공사 상임감사위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수수하였음(⇒ 무죄)

- 2020. 8. 25. 박○○으로부터 ▲▲▲건설 보유 우선수익권 인수 관련 대통령비서실장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5,000만 원을 수수하였음(☞ 무죄)
- (6) ㉚ 발전소 납품 관련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등
- 2020. 9. 16. 박○○으로부터 석탄발전 연료 첨가제 실험 기회 제공 관련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 공공기관인 ■■○○발전 사장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150만 원을 수수하였음
 - 2020. 11. 9. ~ 2020. 11. 16. 박○○으로부터 ■■●●발전 김□□ 승진 인사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담당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 공공기관인 ■■●●발전 사장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 및 1,591만 원 상당의 물품을 수수하였음
 - 2020. 11. 18. ~ 2020. 11. 20. 박○○으로부터 ■■●●발전 김□□ 승진 인사 관련 인사정보 수집 담당 경찰관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수표 및 현금 5,100만 원을 수수하였음(1,500만 원 부분 ☞ 무죄)
 - 2020. 10. 21. 박○○으로부터 ■■○○발전 인사 관련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 공공기관인 ■■○○발전 사장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500만 원을 수수하였음
 - 박○○으로부터, 2021. 11. 10., 2021. 11. 25. ■■□□발전 인사 및 ■■●●발전 인사 관련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 공공기관인 ■■□□발전, ■■●●발전의 사장이 각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163만 원 상당의 물품 및 500만 원을 수수하였음
- (7) ㉛ 경찰관 인사 관련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알선수재)
- 2021. 1. 25. 박○○으로부터 경찰관 인사 관련 경기○○경찰청장 등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2,000만 원을 수수하였음
- (8) ㉜ 한국YY공사 상대 납품 등 관련 변호사법 위반

- 박○○으로부터 주식회사 H의 보안 솔루션 납품, 한국YY공사 소유 토지 저가 매입 관련 공공기관인 한국YY공사의 상임감사위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2022. 1. 8.부터 2022. 1. 25.까지 3,558,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과 2022. 1. 8. 250만 원, 2022. 1. 9. 150만 원을 수수하였음

2. 소송경과

■ 제1심: 일부 유죄, 일부 무죄

- 판시 제③, ④ 각 죄: 징역 1년 6개월
- 판시 제②, ⑤ 내지 ⑨ 각 죄: 징역 3년
- 몰수, 986,808,700원 추징

■ 원심: 일부 유죄, 일부 무죄

- 판시 제③, ④ 각 죄: 징역 1년 8개월
- 판시 제②, ⑤ 내지 ⑨ 각 죄: 징역 2년 6개월
- 몰수, 896,808,700원 추징

[참고] 형 분리선고 근거

공직선거법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

①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

3. 선거법,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중략)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

③ 「형법」 제38조(경합범)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3호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이를 분리선고하고,

1)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①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2.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같은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병과)할 수 있다.
3.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다른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병과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쟁점

- 피고인이 제3자로부터 금품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 피고인이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품과 청탁 사이의 대가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무죄 부분에 대하여 각 항소하였고, 그중 검사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형을 새로 정하면서 제1심판결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 것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나. 판결 결과

- **검사 및 피고인의 상고 모두 기각**(원심 수긍)

다. 판단 내용

- 검사 상고이유에 관하여
 -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범죄가중법 제3조에 따른 알선수재죄에서의 '대가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음
- 피고인 상고이유에 관하여
 -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의 '기부행위', 특정범죄가중법 제3조에 따른 알선수재죄에서의 '대가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음